## 영상분석센터 이용수칙

| 구 분      | 준 수 사 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시설<br>접근 | 사용자는 ITS인증·성능평가센터 3층 영상분석센터 외에 타 시설·공간에 출입할 수 없으며, 부득이한 경우 관리자에게 동의를 구한 뒤 지정된 시설·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사용자는 영상분석센터 출입 시 영상시험목적의 최소한의 장비만을 반입할 수 있으며, 관리자 판단 하에 불필요하다고 인정된 장비의 반입은 제한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사용자는 영상분석센터 출입 시 음식물을 반입 할 수 없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장비<br>사용 | 사용자는 영상분석센터 내에서 제공받는 시험장비에 한하여 자사 영상장비시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사용자는 영상분석센터 내 제공받지 않은 장비에 대한 접근·사용은 엄격히 제한되며, 영상분석센터 내 정보자산 일체에 대해 성능저하 및 보안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.            |
|          | 사용자가 <b>〈별지4〉</b> 에 따라 제출한 영상자료 활용 서약서에 대하여 서약내용<br>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, 사용자는 영상분석센터 이용 제한조치 및<br>민형사상 소송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. |
| 사후<br>처리 | 사용자는 영상분석센터 내에서 편의를 위해 제공받은 시험장비 일체를<br>원상태로 반납하여야 하며, 영상분석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물(이미지 및<br>비디오 등)은 일체 삭제 후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   |